

의안번호	제2906호
의결	2025.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6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센터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바.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47006호(2024. 12. 6.)]

라. 기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852호
 - 가) 예고기간: 2024. 12. 2. ~ 2024. 12. 2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없음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불임참조

4. 본문: 불임과 같음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적합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성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1로 한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다함께돌봄센터
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
4. 가족센터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의 조직·인사·복무·

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성군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중인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빌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참고**관계법령(발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2. 1.]}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16.>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8. 3.>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9. 6.>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 ·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